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

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반갑습니다.

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
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은 자연환경을 인위적
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,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
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
을 도모하고,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

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2조(정의)에서 “자연환경보전”, “생태계”, “소생태계”, “자연환경복원사업” 등에 대한 용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제3조(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)에서는 각 1호부터 8호까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생물다양성의 종합적·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「생물다양성협약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기본원칙)에서도 각 1호부터 6호까지 기본원칙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상위법령인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분하여 구체화하고,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 중 정의 규정에 생략되어있는 “생태계”, “소생태계”, “자연환경복

원사업”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생태계, 소생태계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. (안제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)

나.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. (안 제2조제9호 신설)

다.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. 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

아무쪼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여 서울특별시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책무와 시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